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자료

1. 연말정산 입력 및 서류 제출 : 26년 1월 20일(화) ~ 26년 1월 23일(금)

나이스 직접 입력 또는 PDF파일 업로드 진행 후 출력물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기본사항만 공제, 2026년 5월중 본인 집주소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2026.1.15. 오픈예정) - www.hometax.go.kr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유의사항

가. 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

- 특히, 주택자금소득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 다른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간소화 서비스 제공자료는 저축불입금액, 원리금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지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본인이 확인 후 구체적인 서류와 함께 소득공제 신고 필요
- 해당연도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은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의 의료비 총액에서 차감.

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음

-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 불가. 이 경우 본인이 해당 소득·세액공제 영수증을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 필요

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 필요

- 가족(직계존·비속)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연중상시동의) 19세미만(2006.1.1. 이후)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 신청」후 조회 가능

2. 나이스 연말정산 개인별 공제자료 등록 [기본메뉴-연말정산-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다운받은 PDF파일 업로드 후 모든 탭에서 업로드 내역 확인 및 수정)

탭 구분	기본사항	근무지 실적	인적공제	특별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명세	소득공제 신고서
확인 사항	① 세대주, 세대원 등록 ② 신규자근무자 확인 수정	소득 및 공제금액 확인	소득공제대상자만 등록(그외 명단 삭제) *위칸: 국세청자료 *아래칸: 그밖의자료	본인해당 자료입력	본인해당 자료입력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확인가능	출력물 서명 후 행정실 제출

3.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팩스 또는 복사본은 안됨 (나이스 입력사항 참조)

※ 주소확인: 본인주소지 확인 및 수정

구분	서류명	비고
나이스 출력 ※등록, 출력물 서명 필수 [경로: 나의메뉴-연말정산]	① 근로소득공제신고서 (필수)	기본제출서류, 2P 제출 방법 확인
	② 의료비공제신고서	해당 시 제출
	③ 기부금공제신고서	
	④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	
	⑤ 연금저축 소득공제명세서	
	⑥ 종전근무지 2025년 원천징수영수증, 연도별급여총지급현황	종전근무지 소득 존재할 경우
그 외 증빙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필수)	3개월이내 발급본, 기본제출서류
	② 주민등록초본 (본인 및 수당대상자)	직계존속(부, 모) 가족수당 받는 경우
	③ 가족관계증명서	부양대상가족이 등본에 표기 안될 시
	④ 기부금영수증	원본
	⑤ 간소화자료 누락 영수증	의료비, 교육비 등
	⑥ 국세청 제공 자료 및 기타 증빙서류	해당 시 제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안내 : 정부24 www.gov.kr (인적공제 대상자 주민번호 포함 발급)

※ 건물등기부등본 발급안내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발급안내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공동주택가격열람) <https://www.realtyprice.kr/>

※ 가족관계등록부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가. 의사 및 약사의 도장이 있고 환자인적 사항도 누락되지 않게 확인 후, 제출
나. 보청기, 장애인장구 구입비는 판매자가 사용자의 성명을 확인하여 발급한 영수증
다. 안경의 경우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하여 발급한 영수증

가. **종전근무지 소득이 있을 경우 (25년도 시온고 외 근무지 O)**

- 1) 종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이 제출하여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 2) 종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미제출 시, 본인이 직접 26년도 5월 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진행 필요

나. **종전근무지 소득이 없을 경우 (25년도 시온고 외 근무지 X)**

- 1) 신용카드, 연금, 의료비, 주택관련, 보험 등 사용금액에서 소득이 없는 월은 공제한 총 금액을 작성
- 2) 예시: 3월 근무 - 1, 2월은 소득이 없으므로, 1~2월 사용금액을 제한 금액 기재, 홈택스 자료 다운로드 시 1, 2월을 미선택(제외)하여 진행

※ 제출 시 출력본 마지막 페이지에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나이스 입력

1. 홈택스 로그인 (www.hometax.go.kr)

가. 조회된 항목 한번에 PDF로 다운로드하여 바탕화면 저장

홈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귀속년도: 2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체 월 해제

나에게 자료제출을 동의한 부양가족: **상세보기** 내려받을, 인쇄할 문서에 개인: ☒ 공개안함 ☐ 공개함

건강/고용보험 2,377,500 원	국민연금 2,049,540 원	보험료 8,313,290 원
의료비 1,204,120 원	교육비 0 원	신용카드 24,929,201 원
직불카드 등 16,548,005 원	현금영수증 1,837,294 원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1,200,000 원
주택자금	월세액	주택마련저축

소득·세액 공제 자료 내려받기

☒ 꼭 읽어주세요

☒ 내거장을 클릭을 선택한 주재료: ☐ 원본 입력 ☒ 추가입력

☒ 건강보험/고용보험 ☒ 국민연금 ☒ 보험료

☒ 교육비 ☒ 신용카드 ☒ 신용카드

☒ 직불카드 등 ☒ 현금영수증

☒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필수자료: ☒ 주택연금저축

선택자료: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장기집합투자증권/벤처기업투자신탁 ☐ 장애인연금

내려받기 **인쇄하기** **전자받기**

PDF다운로드 인쇄/전자받기 (단위: 원)

종교단...	유형	기부금합계 금액	공제대상 금액	기부금합계 신청금액
종교단...		19,593	19,593	0
정치자...		6,000	6,000	0
종교단...		312,000	312,000	0
인별합계				337,593

※ 과세기간(25.1.~25.12.) 동안 **근로소득이 있는 대상 월만** 선택하여 자료 다운로드 받기

(예: 25.5.10.부터 근무 - 5월 ~ 12월 선택 후 다운로드)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자 확인 및 안경구매정보 등록하기 (해당자만)

건강/고용보험 2,377,500 원 국민연금 2,049,540 원 보험료 8,313,290 원

의료비 1,204,120 원 교육비 0 원 신용카드 24,929,201 원

의료비 내역 **전체** PDF다운로드 인쇄/전자받기 (단위: 원) **안경구매정보**

☒ 의료비

환자	사업자번호	상호	종류	지출금액
김정미	130-41-84...	안경의사...	안경...	390,000
☒		일반		11,100
☒		일반		161,800
☒		일반		247,900
☒		일반		5,100
☒		일반		4,700
인별합계				458,500
선택 13 건				1,204,120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단위: 원)

피보험자	상호 (보험사명)	계약(증권) 번호	상품명	수령금액	수익자
☒					

조회된 결과가 없습니다.

안경구입비 의료비 자료 등록

☒ 꼭 읽어주세요

구입일시	구분	카드사용자	구입처	구입금액	안경 콘텐츠즈 구매자
2023-12-05 12:45:17	농협은행			25,000	김
2023-12-30 15:15:28	농협은행			390,000	김

기록하기 **등록하기**

※ 의료비를 선택하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과 안경구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3. 주소변경방법(이사 등 주소지 이전 시, 반드시 최신화): 기본메뉴 → 인사 → 인사기록 → 개인신상(기본사항)

승인사항

상신함

미결/접조함

0

공람함

0

예결함

0

가결함

0

변려함

0

메시지함

0

기본 메뉴

관리관리

복무

인사

인사기록

개인정보보전신청

중영서신청

공무원증조서

명령

전보

급여

연말정산

호봉

상시학습

기본사항

성명

부서명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직종/직렬/직급

재직상태

재직

공무원구분

직급

최초임용일

현소속교육청임용일

현직급임용일

현직위임용일

현부시임용일

근무사항

개인신상

성별

가족

학력

임용전경력

임면사항

휴직

임용시험

자격시험

외국어능력

훈련

국외시찰수력

포상/서훈

징계/형벌

배고

승급기록

경력

보통기재단

상시학습

사신변경

저장

분류번호

연급번호

성명(한글)

국적

대한민국

성명(한자)

성명(영문)

생년월일

성별

여성

E-Mail

주민등록

도로명주소

경기도

현 거주지

도로명주소

주민등록도로명주소

경기도

주택전화

직장전화

통근수단

버스

통근시간

시

분

휴대전화

생활근거지

보훈구분

선택

보훈관계

선택

보훈번호

보훈관청

선택

4. 홈택스 다운로드 자료 업로드 방법: 기본메뉴 → 연말정산 → 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 → PDF 업로드

승인사항

상신함

미결/접조함

0

공람함

0

예결함

0

가결함

0

변려함

0

메시지함

0

기본 메뉴

인사

급여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개인등인서

근로소득환인

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

나의 의료비지급명세서

나의 기부금명세서

나의 연금저축공제명세서

나의 월세명세서

나의 신용카드등명세서

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등록

*귀속연도

2023

조회

기본사항

근무지실적

인적공제

특별공제

그밖의소득공제

세액공제/명세

소득공제신고서

PDF업로드

원천징수영수증

※ 일괄내역 업로드 PDF파일은 반드시 '원본에 내려받기'로 다운로드 받은 파일만 처리됩니다.

※ 파일 업로드 시 주의사항

- PDF파일 진본 확인은 국세청 소득세액공제 자료 내려받기에서 [참고2] 사항을 참고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진본 확인을 프로그램을 받아 설치 하시기 바랍니다.

- PDF파일 등록 시 기존에 등록된 내용을 먼저 삭제하고나서 첨부한 파일을 등록합니다.

- 업로드 시 인적공제내역에 존재하지 않는 자료는 등록 안 되오니 먼저 인적공제내역에 입력 후 등록하십시오.

- 상세내역(의료비, 기부금, (개인)연금저축/퇴직연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증권저축) 자료만 개별내역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PDF파일 다운로드 시 비밀번호를 설정한 경우 비밀번호 입력란에 입력해야합니다.

- PDF파일업로드 메뉴에서 등록된 파일은 업로드 이후에는 업로드 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없습니다.

일괄내역 업로드

본인(Y),배우자(Y),부양가족(O),경로우대(O),장애자(O),자녀양육(O)

비밀번호

PDF파일

찾기

개별내역 업로드(의료비, 기부금, (개인)연금저축/퇴직연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증권저축)

비밀번호

PDF파일

찾기

※ 주의사항

- 파일 업로드 시 ⑦인적공제에 존재하는 대상자만 업로드가 가능하므로, 공제대상자가 인적공제에 먼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인적공제에 직접 등록 가능)
- 소득자 개인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다운받은 공제자료를 업로드 하는 메뉴로 ④PDF업로드에서 ⑤일괄내역 또는 ⑥일부 자료만 선택하여 업로드할 수 있다.

5.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월세 등 자료입력 메뉴

< 입력사항 >

1. 연말정산 공제자료 등록: 기본메뉴 - 연말정산 - 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

- 첫 번째줄(국세청간소화서비스 출력물에 의한 금액), 두 번째줄(그 밖의 자료)
-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부금은 한도금액 계산하지 않고 입력,
※ 제출자료 : 나이스 입력 후 출력물 및 각종 첨부물(각종영수증 및 납입증명서 : 간소화서비스이용)

2. 의료비공제 등록: 기본메뉴 - 연말정산 - 나의 의료비지급명세서

-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 기타가족의 의료비는 각각 영수증을 분리하여 작성

3. 기부금공제 등록: 기본메뉴 - 연말정산 - 나의 기부금명세서 (사업자등록번호와 기부자 주민등록번호 정확히 입력해주세요.)

4. 연금저축공제 등록: 기본메뉴 - 연말정산 - 나의 연금저축공제명세서

5. 월세명세서 등록: 기본메뉴 - 연말정산 - 나의 월세명세서

※ 1번~5번까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업로드한 자료는 자동등록 되오니 수기발급 후 공제 받고자 하는 자료는 별도 입력후 출력물 제출 (수기 입력하는 자료들은 필히 두 번씩 확인 정확히 입력)

※ **제출기일(2026년1월22일)을 꼭 엄수**, 기한내 미제출시에는 해당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하여 기본사항으로만 정산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부정신고 및 불성실 신고에 대해서는 추후 국세청에서 학교로 명단이 통보되며 그에 따른 세금이 추징(납부지연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되므로 적법한 범위 안에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신고로 통보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집주소 관할 세무서에서 수정신고함**

※ 기타 문의사항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조회(연말정산 간소화 안내 ☎126),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 제출 시 개인인증서 지참 후 본인이 직접 제출

※ 연말정산 종합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lid=238938>)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공제항목	맞벌이 배우자	배우자 외 부양가족
기본공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제 가능 (맞벌이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 불가능)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 받음
자녀 세액공제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 및 손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능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공제 불가능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결재자 기준 아님)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2025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 공제

항목	구 분	공제 한도	공 제 요 건																	
인 적 공 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12.31현재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table><tr><td>부양가족</td><td>직계존속</td><td>직계비속(동거입양자)</td><td>형제자매</td><td>위탁아동</td><td>수급자</td></tr><tr><td>나이요건</td><td>60세 이상 (1965.12.31.이전 출생)</td><td>20세 이하 (2005..1.1.이후 출생)</td><td>60세 이상 20세 이하</td><td>18세 미만 (2007.1.2.이후)</td><td>없음</td></tr></table>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동거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1965.12.31.이전 출생)	20세 이하 (2005..1.1.이후 출생)	60세 이상 20세 이하	18세 미만 (2007.1.2.이후)	없음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동거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1965.12.31.이전 출생)	20세 이하 (2005..1.1.이후 출생)	60세 이상 20세 이하	18세 미만 (2007.1.2.이후)	없음														
추가공제	대상별 차이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 소득에 종류: 종합소득(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table><tr><td>공제대상</td><td>경로우대(70세 이상) (1955.12.31. 이전출생자)</td><td>장애인</td><td>부녀자(여성) (기혼○/미혼△)</td><td>한부모(남.여) (배우자×,기본공제대상○)</td></tr><tr><td>공제금액</td><td>100만원</td><td>200만원</td><td>50만원 (미혼,이혼,사별한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이 있는 세대주가가능)</td><td>100만원 (입양자, 손자녀포함)</td></tr></table> * 장애인 공제대상자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자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 별도 제출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중복 시 한부모 공제 적용) * 부녀자공제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미만 충족	공제대상	경로우대(70세 이상) (1955.12.31. 이전출생자)	장애인	부녀자(여성) (기혼○/미혼△)	한부모(남.여) (배우자×,기본공제대상○)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미혼,이혼,사별한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이 있는 세대주가가능)	100만원 (입양자, 손자녀포함)								
공제대상	경로우대(70세 이상) (1955.12.31. 이전출생자)	장애인	부녀자(여성) (기혼○/미혼△)	한부모(남.여) (배우자×,기본공제대상○)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미혼,이혼,사별한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이 있는 세대주가가능)	100만원 (입양자, 손자녀포함)																
연금 보험료	공적연금보험료	전 액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보험료																	
특 별 소 득 공 제	건강·고용보험료	전 액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보험료																	
	주택마련 저축	연 400만원 한도	총급여 7,000만원이하의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불입액 40%)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																	
	주택임차 차입금		12. 31.현재 무주택 세대 세대주 또는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상환액 40%) - 국민주택규모(85㎡) 임차, 계약서 입주일 또는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첨부서류: 등본, 임대차계약서)																	
	주택 자금	연 800만원 (또는 1,800 만원 2,000 만원) 한도	12. 31.현재																	
			<table><tr><th>요건</th><th>주택수</th><th>비고</th></tr><tr><td rowspan="2">12.31. 현재 세대주</td><td>1주택</td><td>거주 여부 불문</td></tr><tr><td>2주택 이상</td><td>공제대상 아님</td></tr><tr><td>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세대원</td><td>1주택</td><td>실제 거주(과세기간중 계속 거주)하는 경우</td></tr><tr><td>무주택 세대주</td><td>주택분양권</td><td>6억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 조건 차입</td></tr></table>	요건	주택수	비고	12.31. 현재 세대주	1주택	거주 여부 불문	2주택 이상	공제대상 아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세대원	1주택	실제 거주(과세기간중 계속 거주)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	주택분양권	6억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 조건 차입			
			요건	주택수	비고															
12.31. 현재 세대주			1주택	거주 여부 불문																
	2주택 이상	공제대상 아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세대원	1주택	실제 거주(과세기간중 계속 거주)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	주택분양권	6억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 조건 차입																		
- 주택의 소유자일 것,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일 것 차입시기: 2013.12.31.이전 - 취득당시기준시가 3억원 (국민주택규모) 2014. 1. 1.이후 - 취득당시기준시가 4억원 (제한없음) 2019. 1. 1.이후 - 취득당시기준시가 5억원 (제한없음) 2024. 1. 1.이후 - 취득당시기준시가 6억원 (제한없음)																				
<table><tr><th>상</th><th>항</th><th>공 제 여 부</th></tr><tr><td>근로자 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td><td></td><td>공제대상</td></tr><tr><td>근로자 명의 주택 + 배우자 명의 차입금</td><td></td><td rowspan="2">공제대상 아님</td></tr><tr><td>배우자 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td><td></td></tr><tr><td>공동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td><td></td><td>근로자가 전액 공제가능</td></tr><tr><td>근로자 명의 주택 + 공동명의 차입금</td><td></td><td rowspan="2">근로자 채무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 공제</td></tr><tr><td>공동명의 주택 + 공동명의 차입금</td><td></td></tr></table> (첨부서류: 등본, 등기부등본, 취득시개별주택공시가격(2008.1.1.이후)) 등기 없는 경우(건축물대장),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가장 최근 발표금액(분양가))		상	항	공 제 여 부	근로자 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		공제대상	근로자 명의 주택 + 배우자 명의 차입금		공제대상 아님	배우자 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		공동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		근로자가 전액 공제가능	근로자 명의 주택 + 공동명의 차입금		근로자 채무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 공제	공동명의 주택 + 공동명의 차입금	
상	항	공 제 여 부																		
근로자 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		공제대상																		
근로자 명의 주택 + 배우자 명의 차입금		공제대상 아님																		
배우자 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																				
공동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		근로자가 전액 공제가능																		
근로자 명의 주택 + 공동명의 차입금		근로자 채무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 공제																		
공동명의 주택 + 공동명의 차입금																				
기부금(이월분)	한도 내 이월액	기부금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 받지못한 기부금 이월액 (기간 10년)																		

항목	구 분		공제 한도	공 제 요 건	
그밖의 소득 공제	개인연금저축		연 72만 원 한도	개인연금저축('00. 12. 31. 이전 가입) 납입액의 40% 공제	
	신용 카드		7천이하 300만원 7천초과 250만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공제율로 소득공제 (연령제한X, 소득제한○) -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 30% 도서, 공연, 미술관, 영화상영관, 체육시설 등: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비: 40% ※ 영향관람료, 체육시설(25. 7. 1. 이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세액 공제	자녀	기본공제대상 8세이상	전 액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손자녀포함)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55만원+2인 초과 1인당 40만원	
		출산·입양	전 액	2025년 출산·입양한 자녀의 순서에 따라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이상 70만 원	
	연금계좌		5천5백원(4천5백만원)이하 15% 5천5백원(4천5백만원)초과 12% (근로소득기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5만원, 총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연금저축계좌 600만원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합한 금액 900만원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전환금액) 10%(300만원 한도)	
	보험료	보장성	연 12만 원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납입액(연100만원)의 12%를 세액공제 (연령제한○, 소득제한○)	
		장애인전용 보장성	연 15만 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납입액연 100만원)의 15%를 세액공제 (연령제한○, 소득제한○)	
	의료비	① 본인 6세이하자녀 65세이상 장애인 등	한도없음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난임시술비 3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0%)를 세액공제((연령제한X, 소득제한X)) - 시력보정용 1명당 50만원 - 산후조리원비용 출산1회당 200만원 -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당해연도 실손의료보험금 제외 -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한 경우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 불가	
		② 부양가족	700만원×15%		
	교육비	취학전 아동	300만원×15% (1인당)	(연령제한X, 소득제한○) (직계존속은 제외)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등
		초·중·고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 학교 수강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1인 50만원), 체험학습비(1인 30만원),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등
		대학생	900만원×15% (1인당)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근로자 본인	전액 × 15%		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학자금 대출 상환액 (수강지원금 제외)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 15%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할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항목	구 분		공제 한도	공 제 요 건
세 액 공 제	기 부 금	고향 사랑	10만 원 이하 기부금의100/110 (기부금-10만원)×15% 특별재난지역: 30%	근로자 본인이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 (한도: 2,000만원 이월공제 불가)
		정치 자금	10만 원 이하 기부금의100/110 3천만원 이하: 15% 3천만원 초과: 25%	근로자 본인이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이월공제 불가)
		특례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국자 등에 지출한 기부금
		우리사주	특례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100%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이월공제 불가)
		일반(종교 외)	일반(종교외) 근로소득금액의 30%	사회복지·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일반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일반(종교)	일반(종교) 근로소득금액의 10%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연 13만 원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특별소득공제 등 공제세액이 연 13만원보다 작은 경우에 적용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중복적용 가능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이자상환액의 30%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소유 세대주 '95.11.1. ~ '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 11. 1.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 이자상환 (첨부서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미분양주택확인서)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며 주택자금 공제와 별개임
		월세액	월세액의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한도 1천만원	총급여액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의 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또는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안 받은 경우 세대원(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 포함)이 국민 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이하(주거용오피스텔, 고시원 포함)를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연 1,000만원 한도) (첨부서류: 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입금증(예금주(임대인)표시))
		혼인	50만원	과세기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생애 1회, 2026. 12. 31.까지 한시적용) (첨부서류: 혼인관계증명서)

※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 단,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본다(조특령 81조 10항)

참고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례

소득종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중 합 소 득	이자, 배당소득 (금융소득)	•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분리과세대상)
	사업소득	• 사업소득이 결손(마이너스)이 발생한 경우 • 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분리과세대상)
	근로소득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 일용근로소득(금액 크기 관계없음)만 있는 경우(분리과세대상) •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만 받은 경우(비과세 근로소득) • 실업급여 소득만 있는 경우(비과세 근로소득)
	연금소득	• 공적연금액 516만원, 사적연금액을 분리과세 선택한 경우 • 2001년 이전 불입액을 기초로 수령하는 공적연금 등(과세제외 소득) • 기초생활수급금 및 기초연금만 받는 경우 •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수령하는 유족연금·장애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비과세 소득임)
	기타소득	• 복권당첨소득(무조건 분리과세대상) •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로 종합과세 선택 안 한 경우
퇴직소득		• 퇴직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		• 양도세 비과세대상인 경우